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3. 4.(금)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차, 제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전>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근거 신설 등 방송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경과 사항은 '15년 12월 22일 방송유지·재개명령 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6년 1월 27일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개정 사유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도입됨에 따라 동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방송유지·재개명령은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저해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시정명령과 발동 요건이 유사하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을 준용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 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입니다. 방송분쟁조정 관련 하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향 입법되는 등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 위촉요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상향 입법되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현행 방통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제91조제3항 위임에 따라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사유 등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방송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 위임에 따라 현행 방통위 규칙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상파·SO·위성·IPTV간 전송방식을 혼용할 수 있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

는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의 공적책임, 기존 허가받은 방송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서비스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승인심사 처리기간,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은 기존 방송사업 허가규정과 일관성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000만원 부과,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안건 중에 두 번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된 개정내용이 내용상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현행 시행령에 있던 것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올리고, 시행령 내용은 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시행령이나 법률로 상향 입법 내지는 규정된 취지가, 물론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실 때 방송법 관련해서 한 번 보니까 방송법 제35조의3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방송법상 여러 방송사업자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제1호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조정 그리고 제6호에 보면 그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시행령의 이 두 호를 몇 번 읽어봤을 때 최근 MBC를 포함한 지상파와 케이블 VOD간의 분쟁 이런 것들도, 지금 형식요건상 케이블 VOD에서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석에 따라 협의로 VOD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읽어드린 현행 법령을 보면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VOD 관련 분쟁도 충분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시행령 개

정을 계기로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송사업자 간 내지는 IPTV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분쟁 조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실상 방송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방송광고시장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있으며, 또 콘텐츠에 대한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특히 콘텐츠에 관련된 대가, 재송신 대가 등에 관한 분쟁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방송법으로 상향 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을 나름대로 폭넓게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방송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당사자들의 협의에 진척이 없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시청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전문가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아주 적절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더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방송정책국 입장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그런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향후 일정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있는데 이 시행령이 규개위에서 걸릴 문제는 없습니까?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통 주요 규제요 되면 별도의 대면회의 심사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더 강화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국회에서 상임위인 미방위와 법사위 소위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안에는 방송분쟁이 일어나면 재정권까지 도입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관계자들까지 다 참여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토론도 한 결과, 재정권은 빠지고 방송 유지·재개명령권만 남은 것인데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근거한 시행령도 규개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에 근거한 시행령을 만드는데도 규개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에서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박진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 강화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 김재홍 부위원장

- 강화된 것이 없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유지·재개명령권 같은 것...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유지·재개명령권 자체는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모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모법에 이미 국회에서 확정 통과시켜서 입법한 것을 근거로 만든 시행령인데 법제처 심사는 시행령 체계상의 문제나 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만, 근본적으로 규개위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글썄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규개위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에 대한 심사는 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규개위에서 결국 심사의 대상은 방송유지·재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제재조치를 하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하느냐, 이것을 시행령에 정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규개위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제재조치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꼭 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람에게 주는 제재조치와 같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규개위에서 그 과도한 규제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시행령에 제재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규개위를 거친 거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근본적인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자체는 건드릴 수 없겠고, 제재의 내용, 제재의 수위 문제를 심사할 수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재정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었습니다. 국회 법안 심

사 과정에서 또 상당한 토론을 거친 끝에 그것은 빠지고 이것만 남은 것인데,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개위에 걸려서 하지 않은 예가 단말기지원금 분리공시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미방위나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오늘 이 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정도의 내용이면 규개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기보다는 사무처 차원에서 중요 규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여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으로는 '15년 12월 1일 방송통신재난 관련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22일 재난방송 관련된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입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있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정의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조항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 규정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 전 사전통지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 지정 또는 지정 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난방송 등의 실시·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관 방송사 지정 및 사생활 보호 등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되고, SO·위성·IPTV가 자막형태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을 정비하고 SO·위성·IPTV가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 부분입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1,500만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주관부처가 미래부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안은 미래부와 방통위 같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미래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재난방송 관련해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가 이렇게 입법예고, 규제 심사받으

면 됩니까? 미래부는 또 따로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하고 미래부도 장관 보고를 해서 같은 날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입법예고를 합니까, 아니면 둘이 공동으로 입법예고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공동으로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입법예고안 제28조의2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주관방송사는 표준화 관련해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을 누구와 한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다른 방송사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존에 앞에 나와 있는 시행령대로 주관방송사들은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 잘 듣지 못하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자구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협력대상이 거기에 같이 명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3항에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은 주로 예산 지원을 염두에 두고 안을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법안에는 정보제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크고, 부수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 때 앞에 원래 사업자 의견에서는 재정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가 재정적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 이기주 상임위원

- 안 쓰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에서 못 쓰게 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부처를 이야기합니까? 국민안전처...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같은 경우 산림청에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식의 다양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상청과 산림청은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선 주로 국민안전처나 환경부 등...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관련된 기관들은 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2항에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KBS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1회 이상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미래부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실시하는 것 자체는 주관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3항에 보시면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 제40조의2제3항이 모의훈련까지도 포괄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3항에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와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현재 합의를 해서 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서 주관방송사는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다시 또 그 지적을 듣고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협력하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자구의 문제인데 그것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구 수정하는 정도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자구 수정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의결하더라도 자구수정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제가 다른 논의사항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 12월 9일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의결건 알고 계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MBC에 대한 재허가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부관사항으로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재무구조 악화의...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까지만요. 첫 번째가 그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MBC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시지요? MBC 경영진이 일부 지역사를 대상으로 공동상임이사제를 제안해서 그것이 3월 2일 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 공동상임이사 제도는 2014년, 2015년에도 MBC 경영진이 방문진에 제안하고 주총에 제안했습니다만 지역방송사들의 독립성 저해,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에 방문진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재허가 조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것을 해당 과장에게...,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는 저희가 위반이면 시정명령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장에게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물어서 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확인했고, 저는 재허가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드렸지요? 저는 당연히 위원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정식으로 재허가 조건 위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반이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해서 안건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금년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과거 2014년, 2015년도에 기존 방문진이 이 안전에 대해 반대했던 수용하지 않았던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속기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안광환 MBC 사장이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출석해서 관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발언입니다. “광역화를 해야 한다. 지역사 스스로 자율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니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MBC 광역화는 MBC 내에서도 대외적으로나 지역사들끼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역MBC 합병 승인할 때도 지역MBC가 자율적으로 합병 결의를 해 온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승인심사를 해 줬습니다. 사장의 발언 자체는 지역사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언이고, 따라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매년 4월까지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실적이 제출되면 그때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4월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사안이 발생했는데 바로 확인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4월에 점검하면 저희 논의가 빨라야 5월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공동상임이사 선임은 MBC 주주총회에서 일단 결정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전 단계라면 저희가 하루 이틀 다뤄 가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미 선임이 된 상태여서 그것은 이행실적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점검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실적을 제출받아서 그때 점검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으로 이 재허가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급적 조속히 점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시다만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유럽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박 6일 동안 모바일 세계대회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 체코 통신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수장들과 간담회, 회담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하게 보도를 잘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고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를 비롯해서 우리의 정책 직무 대상 곳곳에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합의 결정 대응이라고 할까, 행정 권한 직무행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가기 전에 2월 19일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떠났습니다. 기자 회견문은 위원장님께도 전달이 됐습니다. 개선방안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운영상의 기본문제는 합의제 및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을 잘해 보자. 잘해야겠다. 문제는 복잡다단해지고 어려워지는데 합리적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의제가 무엇이나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명의 상임위원이 다양한 출신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철학도 서로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사들이 표출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정되고 결국 결정에 이르는 것이 합의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한이 있는 사항을 계속 의견수렴 합의가 안 되면 늦춰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이 가장 좋은 결정방법? 민주주의의 제도?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소수자 반대의견을 가진 상임위원이 이것은 결코 안 된다고 반대하면 그것은 거부권을 포함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퇴장한 사건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그렇게 강경 투쟁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에 직접 관련된 건, 신체권, 언론자유, 거주권, 교육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소수자라도 반대하면, 그것은 다수결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더 논의시간을 갖거나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그런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시되어 와서 저도 또 고삼석 위원도 소수 상임위원들이 더 이상 의견수렴을 위한 티타임, 간담회 비공식 회의에는 참석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희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의안을 조정하기 위한 토론 논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티타임, 상임위 간담회는 참석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개선방안이 생길 때까지 그것을 모색할 때까지는 그런 비공식 간담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영방송 임원진 구성, 원칙과 기준이 없는 구성이라고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방송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었던 방송평가규칙의 개정,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녹취록 사태, 진상파악을 위한 자료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부, 모두가 다 다수결을 무기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소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다수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일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근거,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중장기 방송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워크숍,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었고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명색이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해외 공무 출장 중에, 이것은 오래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결정된 출장입니다..., 이 기간에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했다는 것을 듣고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사무처에도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과 위상, 입법 취지를 직업관료들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출입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처의 통할권, 직업관료들의 인사권을 가진 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장관이 결심하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할 수 있는 독임제 부처가 아닙니다. 독임제 부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임제 부처도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차관과 다른 참모들과 상의합니다. 여기는 독임제 부처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합의제로 이끌어가는 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사무처 요원들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상임위원들의 직무수행과 또 반대의견이 계셨으면 그 반대의견에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따져 봐야겠지만 최후의 거부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견수렴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전체 회의는 저희의 직무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간담회 자리에서 못다한 말씀들을 직접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증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합의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규정된 기관은 단순 다수제가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수결의 원칙만 적용되고 있을 뿐 합의제 의사결정의 규범은 존중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신중한 의사결정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한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민주적 정당성 그다음에 그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가 합의제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 조율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최소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사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상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그것을 위한 자료조사를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방문진법 등

여러 법에서 저희 위원회의 직무로 그리고 위원회 권한으로 현재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법에서 이렇게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들께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위원 개개인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다수 위원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신껏 그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입장도 내고 필요하면 행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방송의 공적책무·공공성·공익성 확립을 위해서 법이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 자료요구할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조직 운영과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소수의견이 이렇게 묵살되고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면 저희들은 더한 결심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과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 단지 소수 위원들이 불편해서 불만을 표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지요. 아까 중장기 방송정책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방송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하는 워크숍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KISDI에 중장기 방송정책을 논하기에 앞서서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KISDI가 그동안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소위 말하는 초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초안을 가지고 그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들과 나름대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제출되면 저희가 올해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바로 저희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마치 전략회의 하듯이 저희가 주최하는 중장기 방송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당연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KISDI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초안을 가지고 교수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하니 제가 한 번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참석해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위원장이 참석해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는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3월 개학 이전만 가능하지,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월 18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무렵에 KISDI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참석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날이 대정부 질의일자로 잡혀서 “그러면 제가 참석을 못 하겠다. 그냥 KISDI에서 진행하도록 하라”고 했더니 “기왕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 뒤에 개학 전에 일주일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로 한 번 변경해 보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날짜가 25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들과 사무처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 아니고 KISDI가 아까 말한 그런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그냥 참관인으로 참석해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서 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참석 여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셨고 아닌 분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치 방통위가 중장기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또는 논의하는 자리를 열면서 위원님들과 일정도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위원님들과 일정을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간담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전 의견 조정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절차로 활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간담회, 소위 티타임을 통해 다양한 반대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견들이 이유 없이 거기에서 묵살되어서 본회의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논의해서 바로잡은 것은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것을 ‘티타임에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런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간담회를 통해 제재의 수위라든지, 또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폭넓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면서 서로 사무처에도 잘 몰랐던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좀 더 치밀한 안전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지, 그것이 마치 무슨 소수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본회의에서 말을 못 하게 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진행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최후 거부권 이야기도 하시는데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하다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고 적절한 수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로 제13조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과는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다수결하기 이전에 저희 위원 다섯 사람 사이에서 보다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저희는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더 여러 가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원에서 와서 말씀드리는데 법원에도 합의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 사람이지만 재판부의 의견이 다르면 일정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수결이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회의석상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같은 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다수결로 한 적은 없고 그런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다수의 분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권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보는 것은 저로서는 각자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능하면 법 해당 조항에 맞게 집행해야지, 그 앞서 선언적인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방통위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선언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법률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MBC 녹취록 사태와 관련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던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됐던 법 조항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경우에 비추어서 지난 제1기, 제2기 위원회에서 어떠한 법 해석과 적용이 있었는지만 살펴보면 저는 저희가, 특히 제가 결코 무리한 해석을 요구하거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관점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어 있고, 또 정치적 이슈로 번져 나갈 그런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장들은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MBC 문제 언급을 하시는데 그 MBC 사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노조의 주장이 시민단체와 또 이런 표현을 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다면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우려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을 지켜야 할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정파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일반적인 위원회 같으면 주의, 주장이 다르면 그것을 토론했서 결론을 내지 않고 쪽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의견수렴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위원회이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국정을 일정 부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든 시급하지 않든 결정을 내야 한다면 결정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정치적 주장과 맞닿아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번져나가고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정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사안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자꾸 번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마지막 발언이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기타 안건에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상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특정한 이슈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월요일 오후에 티타임하고 목요일에 전제회의를 하는데 그 두 날짜 외에 화·수 내지는 금요일 날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는, 물론 필요하면 더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어젠다를 놓고 하는 티타임이 아니고 그냥 위원님들 간 무슨 이야기든지 서로 하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그야말로 간담회, 티타임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연락을 드렸는데 참석하지 않으셔서 어쨌든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그런 자리를 가능하면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하나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추천을 받아서 온 위원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중반기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비례대표 한 번 했고 지역구 선거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일찌감치 접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는 누구와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공천을 받고자 하고 총선거 준비하고 그렇게 나갔다면 그것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했던 것 아니냐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에 “저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여기 올 때도 추천하는 당과도 비공개 면접심사 자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 개인의 철학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소신이지, 제가 어떤 정치적 집단,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선 정치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상당 기간, 그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간담회든 어떤 토론회든 반대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이 ‘이것 해 봤자 시간 소모다. 에너지 소모다. 한 번도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소화된 적이 없지 않은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견을 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보완자료를 내면서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했던 것 몰랐던 것을 거기에서 새로운 자료를 얻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 말고 정말 반대의견 소수자이지만 그런 의견도 과연 반영된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부권, 거부권 때문에 여기가 행정 집행기관인데 계속 표류시키고 가야 하는 것이냐?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민 기본권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안팎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상임위원들 한두 명이 이것은 결코 안 되겠다고 반대하면 그러면 토론 논의시간 연장이라도 하든가 보류로 해야 하는데 그 의결 날짜 그 회의에서 꼭 강행 통과시키고 마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 논의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이고 지금 상당한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수결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 규범 우리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 전제 독재체제도 다수결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수결로도 파괴할 수 없는 민주적 규범과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죄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존립 근거, 정체성, 입법취지에 맞게 살려나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까 워크숍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위원장께서도 해명하셨기 때문에 물론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것 초안이라고 해명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리고 제목은 방송정책 기본방향, 이것은 정말 오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정책과제를 어느 선에서 논의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위원장만 참석한다고 할까, 특정 상임위원들만 참석한다는 것은 균형이 깨질 뿐만 아니라 이장에서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저의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을 준비하면서 야권 상임위원, 그래도 부위원장이라고 명색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연구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초안이라도 하려고 한다거나 일언반구도 그런 사전 상의 한마디 없이 해외출장 중에 그대로 했다는 것은 제가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

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례를 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가 2014년 3월 말 재임 이후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최근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인데 누적되어서 저희는 더 이상 그런 간담회,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하게 워크숍만 말씀드리면 워크숍은 2월 25일 날 있었는데 2월 19일 날 고삼석 위원님에게는 구두로 그 워크숍 명칭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는 그날 보고드리러 갔는데 출장 준비로 바쁘시다고 해서 서면으로 그와 같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과제를 맡은 KISDI의 연구위원과 그다음에 교수들이고, 저희는 마치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참석하셨는데 참석해서 마치 플로어에 참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토론시간에 한두 마디씩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구나 고삼석 위원께서는 제가 그날 같이 가자고 권유까지 했는데 마치 무슨 절차상 문제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말씀하셔서 아마 그 부분에 오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그 오해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에게 전달된 것은 제가 2월 21일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집에서 출장을 떠났는데 2월 19일 금요일 주말 6시에 제 부속실로 이런 예정 사항을 서면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고삼석 위원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에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상임위원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행사였다. 사무처와 위원장만 보고받고 결정해서 진행된 것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참석하려면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삼석 위원도 문제제기해서 뒤늦게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 워크숍이 있으면 '화요일 날 참석하려면 참석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어떤 상임위원이 참석하겠습니까? 그것은 감정상으로도 그런 것이고, 옆구리 찔러서 인사 받느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됐고 위원회 운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석여부를 말씀드리려면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데 날짜가 정해진 것이 18일 퇴근 무렵 되어서 오후입니다. 그래서 19일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늦었다면 방법이 없지요. 25일로 정해진 것도 그것도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18일 날 늦게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말씀드리고 더구나 여당 위원 두 분에게는 그나마 19일 날 보고가 안 되고 22일 날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거기에 참석했더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참석한 분들이 "위원장님은 오셔서 인사말씀만 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계시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KISDI가 연구용역 과제를 하는 것을 교수들과 토론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시간되는 사람은 가서 보자는 의미의 행사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23일 오후, 25일 오전에 워크숍을 개최하기 하루 반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님이나 고 위원님께는 그 전 주에 알려주고 저는 하루 반 전에 알려 줘서, 저는 듣고 갔는데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한나절 앉아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날짜를 새로 정해서 그날 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워크숍을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서 정할 방송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워크숍은 추후에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그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3분 폐회 】